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핵검진 의무시설에 군부대 포함〉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26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주요 검토사항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황명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1. 26.
- (3) 회 부 일 : 2026. 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종사자 등이 결핵검진등¹⁾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기관의 장 등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결핵검진등) ①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군부대의 장</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말함(「결핵예방법」 제10조)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종사자·교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검진의무 시설 및 종사자 현황은 126,883개소, 1,709,815명임.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대상 시설 및 종사자 현황 >

검진 의무 대상	시설(개소)	종사자(명)	자료원
합계	126,883	1,709,815	-
의료기관	74,908	893,810	2025 보건복지통계연보 (‘25.12.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460	10,105	2024 산후조리원 현황 (‘24.12.31. 기준, 보건복지부)
학교	12,164	450,877	2025년 교육기본통계 (‘25.4.1. 기준, 교육부)
유치원	8,140	55,262	2025년 교육기본통계 (‘25.4.1. 기준, 교육부)
어린이집	26,161	280,931	주요업무 통계자료 (‘25.8.3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유보통합대응준비단)
아동복지시설	5,050	18,830	2025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I, II 및 2023년 지역아동센터 현황 (‘25.11월/‘25.5월 기준,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결핵검진등의 의무대상시설에 군부대를 추가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결핵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군부대의 인적 규모(약 50만명 추정) 등을 고려할 때, 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잠복 결핵이나 초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부대 내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결핵환자 신고 현황 >

구분	‘11년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환자수 (명)	50,491	...	30,304	25,350	22,904	20,383	19,540	17,944
환자율 (명/105)	100.8	...	59.0	49.4	44.6	39.8	38.2	35.2

* 자료: 『2024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질병관리청, 2025.3월)

< 군부대 근무인원 수(추정) >

구분	인원	자료원
합계	499 천명	-
군 병력	450 천명	법사위에 대한 국방부·병무청 제출자료('25.7월 기준), 언론 보도('25.8월) 재인용
현역병	200 천명	현역병 입영현황 5년('20~'24년) 평균 202,231명, 병무청(2025)
현역병 외	250 천명	전체 군 병력 - 현역병
군무원	46 천명	2024년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한국국방연구원(KIDA) ('23년 기준)
민간조리원	3 천명	2025년 국방통계연보, 국방부 ('24년 기준)

* 군부대 인력(국방부 소관) 관련 공개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 존재
자료: 질병관리청

□ 다만, 2024년 군부대 내 결핵 발생 인원은 14명으로, 의료기관(893건/2024년 기준) 및 학교(425건/2024년 기준) 등 현행법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군 결핵 환자 발생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평균
환자 수	20	11	11	14	3	59	11.8

자료: 국방부

< 집단시설별 결핵 발생 현황 >

(단위 : 건)

구분	전체 발생건수 ¹⁾	집단시설						
		학교	의료 기관	군부대/ 경찰	교정 시설	사회복 지시설	사업장	그 밖의 시설
2021	7,161	559	1,042	82	62	1,173	3,990	253
2022	6,252	493	923	54	54	1,194	3,339	195
2023	6,205	409	913	49	70	1,442	3,111	211
2024	6,185	425	893	75	64	1,459	3,021	248
2025	2025년 결핵 역학조사 결과는 '26.5월 공개							

주1) 집단시설 역학조사 실시 기준에 따른 조사 건수에 대한 자료로 환자 수와 동일하지 않음
자료: 질병관리청

□ 또한, 군인 중 현역병은 현재 「병역법」 제14조의3 및 「군보건의료법」 제16조에 따라 결핵검진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건강검진을 2년간 총 2회(입영 전 1회, 입영 후 1회)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역병에 대한 신체검사·건강검진 실시 시기 >

구분	실시 시기
입영 전(신체검사)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입영 후(건강검진)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

주: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은 결핵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이 되는 군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건강검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필수검진과 임의검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검진의 대상별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상병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2. 현역병을 제외한 군인등: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③ 필수검진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2.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3. 구강검진
4. 그밖에 군인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한편,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는 대상자로 의무시설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역병’이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보이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부대의 장에게 현역병 등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결핵관리지침」에서는 ‘종사자·교직원’의 의미를 ‘직·간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보아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은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p.417

Q: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A: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으로 볼 수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 이 때, 사회복무요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질병관리청 (수용곤란)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은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과 같이 결핵감염 위험이 높거나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하여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을 검진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군장병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결핵감염 고위험군 또는 면역취약 집단으로 보기 어려움.
- 더욱이 개정법안에 따른 군부대의 장, 국군장병 등은 그 수와 분포 등이 군기밀과 관련된 사항으로, 「결핵예방법」에서 결핵검진등의 의무를 명시하더라도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보건소)가 그 현황을 조사·관리하는 데 한계가 큼.
- 또한 국군장병의 건강검진에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흉부 X선 검사(결핵검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군 관련 법령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국방부 (수용곤란)

-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이미 결핵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대 후에도 ‘상병 진급예정일 3개월 전부터 진급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필수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 평균 2년의 복무기간 중 2번의 결핵검사를 시행 중임.

- 또한, 군부대 내 결핵 발생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대 결핵발생률은 결핵 퇴치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 대상자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문 의 처
02)6788-5496